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6. 10.(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4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건 - (2010-34-143)

-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국내 LBS 시장 활성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위치정보 활용도 제고, 합리적인 위치정보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 주요 내용

① LBS 산업 육성

- 국내 LBS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개인 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허가·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정보 중개사업 도입 등 사업 다양화 추진
 -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경쟁 관련 규정 신설
 -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사업자 의무사항 및 처벌규정 완화
 - 정밀한 위치 값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위치측정 인프라 확충
 -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포털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무선인터넷 접속점 위치정보 DB'를 공동 구축·운영
 - 위치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고, 지하공간, 실내공간 등 음영지역 해소 추진
-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 시스템
- LBS 활성화를 위해 신규 LBS 발굴 및 사업자의 비즈니스 지원
 -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新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LBS 사업자의 공통 애로업무를 대행하는 등 지원업무 수행
 - 측위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연구 및 표준화 추진
 - T-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 Wi-Fi/GPS 복합 측위 칩셋 등 개발
 - u-위치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추진

※ u-위치서비스 : 다양한 무선망을 활용한, 끊김 없는 위치기반 서비스

② 사회 안전망 고도화

-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 위기상황의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긴급 구조체계' 마련 추진
-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이용자가 비상구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용 초소형 무선인터넷 접속점'을 장착하는 방안 검토·추진

③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을 사업자가 적용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높임
- 긴급 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

※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함

- LBS 산업협회가 사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를 강화

2) 20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건 - (2010-34-144)

○ 최재유 융합정책관의 보고를 받고, 「20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건(기획재정부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EBS 수능방송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스토리지 임대 및 회선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소요재원(37억원) 증액 편성
- ②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부권에만 방송되고 있는 광주영어FM방송을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여수권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보조국 설치에 필요한 소요재원(3억 4천만원) 증액 편성
- ③ 개정된 언론중재법('09. 2. 6. 개정) 및 공직선거법('10. 1. 25.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중재부 증설,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11억 3천 3백만원) 증액 편성

3) SK텔레콤(주) 및 (주)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10-34-145~146)

- 김대희 이용자보호국장의 보고를 받고, 피심인 SK텔레콤(주), (주)KT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USIM* 이동성을 제약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주)와 (주)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SKT 20억원, KT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자 식별모듈)

○ 주요내용

① 위반내용

- 휴대폰 보호서비스*의 무단가입

- * 단말기에 타인의 USIM을 장착하면 단말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무료 부가서비스
- 단말기 분실·도난시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자 내의 USIM 이동을 차단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설정해야 함.

·'08. 10. 1일부터 '09. 12. 31일까지의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 중에서 각사 당 1만여 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SKT는 77.4%, KT는 55.0%의 가입자를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동의 없이 가입시킴

- ▶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IV.2호'나'목을 위반

-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본사와 대리점 간의 단말기 보조금 정산, 가개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개통일로부터 익월말(최소 30일 ~ 최대 60일)까지 USIM 이동을 차단

- ▶ 이는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이자, 법규의 근거 없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

- USIM 단독 판매·개통 거부

·이용자가 SKT와 KT에게 USIM만을 구매한 후, 회선을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제시를 요구하면서, 단말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USIM 단독 판매 및 회선 개통을 거부

- ▶ 이는 이용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신청을 거부한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

- 국내 단말기의 해외 이동통신사 USIM 이용 제한
- 자사 판매 단말기에 해외 USIM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이용자가 해외 체류시 본인의 단말기에 해외 이동통신사의 USIM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차단
 - ▶ 이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단말기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

② 의견진술 내용

- SK텔레콤(주)

- 휴대폰 보호서비스는 무료 부가서비스로서 가입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USIM 이동제한 기간 설정은 보조금 편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USIM 단독 개통에 있어, 개통 전산시스템이 USIM과 단말기 IMEI*를 1:1로 매칭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단말기 확인이 불가피함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WCDMA 단말기 식별번호

-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은 단말기의 해외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본 건 관련 행위들은 고의성이 전혀 없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볼 수도 없으나, 당사자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 (주)KT

-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은 판매점에서 부주의로 발생된 사안일 뿐, 고의적인 USIM 이동제한 의도가 없었으며,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은 유통질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USIM 단독개통 거부는 개통 전산시스템상의 문제이며,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은 Lock 해체에 대한 기준 부재에 따른 것임
- 본 건 관련 행위들이 현저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행위의 중대성도 약하다고 판단되나, 자진 시정 노력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람

③ 행정처분 내용

- 시정명령

-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를 즉시 중지
-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 개통 허용 및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SKT : 9일, KT : 10일)

- 과징금 부과

-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SKT는 20억원, KT는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4)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2010-34-141)

- o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사. 보고사항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o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유도 등을 위해 마련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황철중 네트워크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o 주요 내용

① 허가·신고 대상 및 보호조치 의무 관련 (개정, 제12조의2, 제16조)

-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실 확인 자료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면제

② 위치정보 사업 유형 다양화 관련 (개정, 제2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他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정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③ 공정경쟁 규정 신설 관련 (신설, 제35조의2, 제35조의3)

- LBS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육성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신설

④ 사업자의 '즉시 통보' 규정 완화 관련 (개정, 제19조)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개인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매회 즉시 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 완화

⑤ 벌칙 규정 등 완화 관련 (개정,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37조의2,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위치정보법 상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법인이나 고용주가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제 완화
-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 전(前)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

⑥ 양수 및 합병의 신고 기한, 긴급구조 관련 위반행위 규정 명확화 (개정, 제10조, 제2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에 있어, 양수 및 합병 후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명확화
-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함

2)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석제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신 기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 개선) 지도 서비스, 주변정보 서비스 등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행태를 분석하여 광고에 활용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행태정보 : 온라인상에서의 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내력 등 이용자의 행위에 관한 정보

- (사물지능통신 지원법 제정) 사물지능통신 기반 구축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 동기와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마련 : 「(가칭)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및 사물 정보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TV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非 홈쇼핑방송사업자에게도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이용한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 :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 개정

※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채널(KBS1, 공공채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제한

-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IPTV 등 융합서비스를 통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 의료 허용범위 확대 추진(보건복지부)

②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 (지상파방송시간 제한 규제 완화) 다매체·다채널 방송환경에서 지상파TV에만 부과되고 있는 방송시간 규제 개선 : 「지상파방송사의 허가·재허가 조건」 변경

-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현행 시장매출액 기준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위성DMB, WiBro, 지상파LBS 등 융합서비스에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파법」 시행령 개정

-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등 개선)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허가·재허가 심사 기준, 절차' 등 개선 : 「방송사업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방송광고 운용 규제 개선) 지상파방송의 토막광고, SO·위성방송·DMB의 토막 광고·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 운용 규제 완화 :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등 개선) 위성휴대통신(GMPCS*)별로 부과되고 있는 부과 기준을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사업자에 대해 전파 사용료 감면 등 추진 : 「전파법」 시행령 개정

*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 위성을 이용한 휴대 통신으로 산간, 도서, 오지, 사막, 바다 등 통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형에서 통신 가능 (국내의 경우 KT,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컴, AP시스템이 서비스 제공)

- (웹토셀 신고·검사제도 개선) 소출력 옥내 중계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웹토셀 (초소형 기지국)을 非 신고대상 무선기기로 분류하고 신고·검사 면제 등 규제 완화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 관한 고시」 개정

③ 이용자의 편익 증대

-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확대하고,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출시 유도
- (본인확인제도 개선) 악성 댓글 피해 방지 등 법제정 취지, 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 자율규제 성숙도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개선방안을 모색
- (제한 외국인의 유료방송 가입조건 등 개선) 외국인이 케이블TV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가이드라인 마련

④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재판매 제도 시행령 등 마련) 재판매(MVNO) 제도 도입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한 시행령 등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마련)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시청점유율 30% 제한 규정(방송법 제69조의2)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및 고시 제·개정 : 「방송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 (외주제작 제도 개선)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 육성을 위해 방송법의 외주제작 의무 편성제도를 보완 :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 (이통사 - CP*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이통사 - CP 간 수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CP(Contents Provider)

3)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o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요금이 정당하게 과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요금고지서에 관한 구체적 법적 판단기준이 미비한 상태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김대희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고시 주요 내용 (요금고지서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 및 기준)

- ① 요금고지서에 '필수 고지사항 (과금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② 상품광고 등을 과도하게 기재하여 이용자의 필수 고지사항에 대한 이해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 ③ 필수 고지사항을 평균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와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10. 6. 11.(금) 16:00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6:45)

※ 11:50 정회, 15:30 속개, 16:30 정회, 16:35 속개